

대신 e-부자만들기주식투자신탁 제1호

이 투자설명서는 대신 e-부자만들기 주식투자신탁 제 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 e-부자만들기 주식투자신탁 제 1호 수익증권의 인수청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명 : 대신 e-부자만들기주식투자신탁 제 1호

2. 투자신탁의 종류 :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3. 자산운용회사명 : 대신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4. 판매회사명 :

판매회사	상담가능전화번호
대신증권(주)	1588-4488
하나은행(주)	1588-1111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5. 작성기준일 : 2007년 10월 31일

6. 투자설명서 비치, 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

비치·공시장소	인터넷 게시주소	비치·공시장소	인터넷 게시주소
대신증권(주) 본·지점	www.daishin.co.kr	대신투자신탁운용(주)	www.ditm.co.kr
하나은행(주) 본·지점	www.hanabank.com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보(본문 2~4쪽)

투자설명서 요약(핵심 투자설명서)

제 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종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추이
7.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투자실적
 -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 나. 연평균 수익률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 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산정 및 공시

1. 자산평가
2. 기준가격산정 및 공시

제 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V.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 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1~2 쪽)

1. 명 칭 : 대신 e-부자만들기 주식투자신탁 제 1 호
 - 대신 e-부자만들기 주식투자신탁 제1호 Class A
 - 대신 e-부자만들기 주식투자신탁 제1호 Class C1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종 류 : 주식형 · 추가형 · 개방형 ·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 대신투자신탁운용(주)

II 투자정보(☞본문 2~4쪽)

구 분	주 요 내 용
1. 투자 목적	- 주로 국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로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 추구. -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투자신탁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 투자전략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우량주식, 가치주식 및 고배당주식을 중심으로 장기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투자신탁임. - 신탁재산의 40% 이내에서 금리전망에 따라 듀레이션을 고려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주력하며,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및 CD금리선물을 이용하여 자산가격하락 위험 대처 - 투자자산간 또는 투자자산내에 분산투자 및 Loss-Cut 제도 시행으로 투자위험을 관리
3. 주요 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높음 -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투자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함
5. 기준 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함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ditm.co.kr)에서 확인 가능함

6. 운용전문인력(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최형근	40 세	부장	125 개	7,185 억	- 서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 주식 운용(대신증권 주식팀, 선물옵션팀 대신투신 7년 8개월)

※ 상기인은 주식운용분부를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 : 최초설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4~8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클래스 A	클래스 C1	
종 류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판매 기준		온라인 전용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 0.25%	없음	
	환매수수료 ¹⁾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60%	연 0.60%
		판매회사보수	연 0.13%	연 0.33%
		수탁보수	연 0.03%	연 0.03%
		일반사무관리보수	연 0.02%	연 0.02%
		보수합계	연 0.78%	연 0.98%
	기타비용 ²⁾	연 0.65%	연 0.65%	
총보수·비용비율 ³⁾		연 1.43%	연 1.63%	

-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종류 수익증권별 기준에 따라 일회적으로 부과
 2)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추정치임
 3)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수익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08.4.7. 현재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또한 거주자는 3 년이상 투자하는 적립식 계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 및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세부사항은 본문참조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9 시~오후 4 시 30 분) 중 판매회사 창구를 통해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3 시 이전	오후 3 시 이후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 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2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4 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4 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1588-4488, 1588-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daishin.co.kr, www.hanabank.com)**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

/ () ()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 대신 e-부자만들기 주식투자신탁 제 1 호
 - 대신 e-부자만들기 주식투자신탁 제 1 호 Class A
 - 대신 e-부자만들기 주식투자신탁 제 1 호 Class C1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3. 종류 : 증권간접투자기구(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 대신투자신탁운용(주)
5. 최초설정일등 연혁 : 2007. . . 최초설정
6. 수탁고 추이 : 해당사항 없음
7. 해지사유
 -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투자신탁재산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 국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로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또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우량주식, 가치주식 및 고배당주식을 중심으로 장기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채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내에서 금리전망에 따라 듀레이션을 고려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주력하며,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및 CD금리선물을 이용하여 자산가격하락 위험에 대처합니다.
- 어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하로 투자합니다.
- 투자자산간 또는 투자자산내에 분산투자 및 Loss-Cut 제도 시행으로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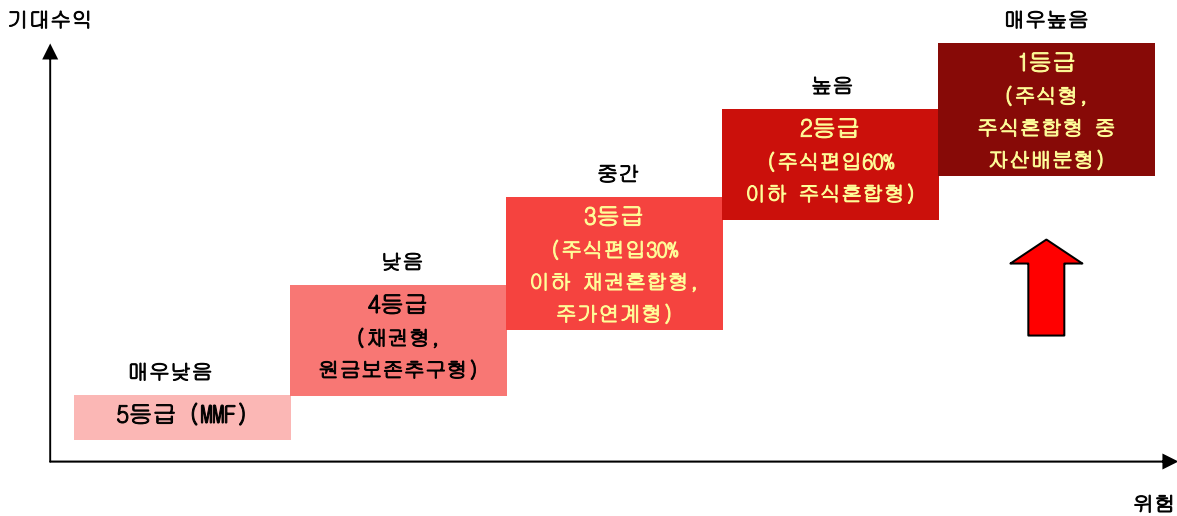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동성위험
 -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현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의 투자에 있어서 신탁재산 60%이상을 우량주식, 가치주식, 고배당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성장형 주식투자신탁으로 투자위험 5등급중 1등급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만들기 주식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업종별로 우량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식과 고배당 주식을 선별·집중투자하여 동 주식시장의 상승에 상승하는 투자수익을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투자위험등급기준 >>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간접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ditm.co.kr)·판매회사(www.daishin.co.kr , www.hanabank.com)·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최형근	40 세	부장	66 개	5,656 억	- 서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 주식 운용(대신증권 주식팀, 선물옵션팀 대신투신 7년 8개월)

- 상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와 운용자산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추이 : 해당사항없음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연간, %)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 고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대신 e- 부자만들 기 Class A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25%	-	
		환매수수료	이익금의 70%	수익증권보유기간 30일 미만	
	이익금의 30%		수익증권보유기간 30일 이상 90일 미만		
	대신 e- 부자만들 기 Class C1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이익금의 70%	수익증권보유기간 30일 미만	
	이익금의 30%		수익증권보유기간 30일 이상 90일 미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 고
대신 e-부자만들기 Class A	자산운용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60%	매 6개월 후급	일할 계산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13%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		
	일반사무관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2%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65%	사유 발생시 지급	
	총보수·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43%		
대신 e-부자만들기 Class C1	자산운용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60%	매 6개월 후급	일할 계산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33%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		
	일반사무관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2%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65%	사유 발생시 지급	
	총보수·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63%		

* 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회계 연도(2006.11.01 ~ 2007.10.31)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2.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구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e-투자만들기 Class A	171,575원	487,078원	834,919원	1,868,605원
e-투자만들기 Class C1	167,075원	526,704원	923,195원	2,101,451원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이익금의 재투자 여부,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 다음의 비용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당업무에 소요되는 금액의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 ✓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 ✓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재산에서 납부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환급받게 되므로 투자신탁에서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에 대한 과세율

- ✓ 개인투자자의 경우 : 소득의 15.4% (주민세 포함)
- ✓ 일반 법인의 경우 : 14% (비과세 법인의 경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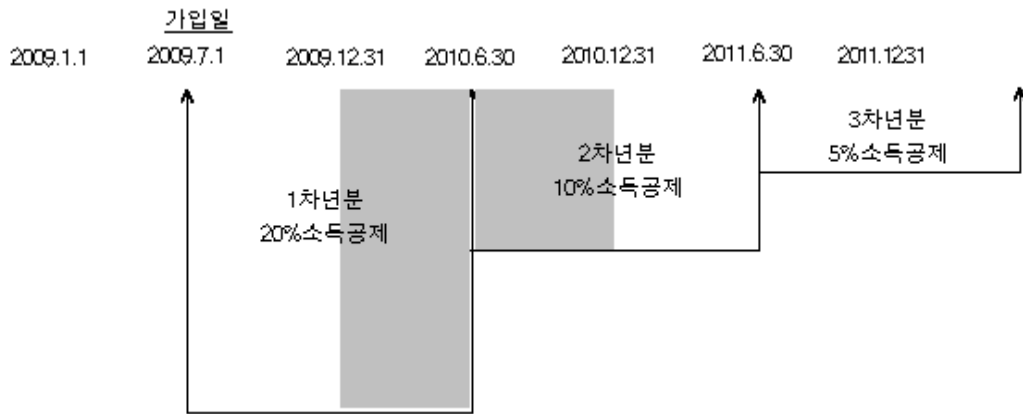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 ✓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 ✓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 ✓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 ✓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 ✓ 소득공제 사례 :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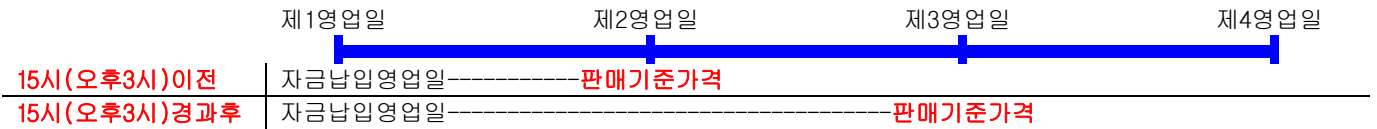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의 분배

1. 매입

- 판매회사의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Class A 수익증권의 수익자**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② **Class C1 수익증권의 수익자** :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이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간 및 영업일에 따릅니다.
 - ✓ 15시(오후3시)이전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 ✓ 15시(오후3시)경과후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수익증권의 적용판매가격 예시



※ 이 투자신탁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 보다 정확한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결제방법 등을 위하여 투자설명서 본문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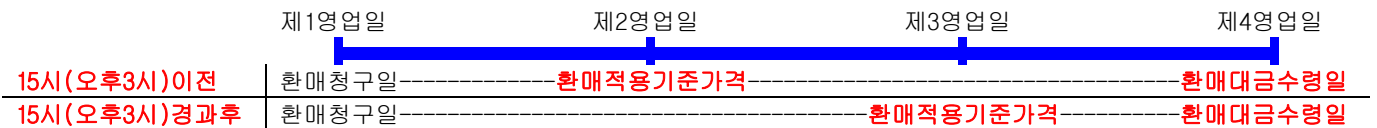
2. 환매

➤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간과 영업일에 따릅니다.

- ✓ 15시(오후3시)이전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
- ✓ 15시(오후3시)경과후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
- ✓ 수익증권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 수익증권 환매시 적용기준가격 및 환매금의 실수령일



※ 환매금 실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제4영업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환매수수료 : 징구된 환매수수료는 당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30일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 환매제한

- ✓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

- ✓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분환매

- ✓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신탁약관 제26조에서 정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

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 ✓ 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상환금등의 지급시기
 - ✓ 상환금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환금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신탁의 개요

1. 투자전략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우량주식, 가치주식 및 고배당 주식을 중심으로 장기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e-부자만들기 포트폴리오의 구성조건(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치의 차별적 반영과 주가의 차별화된 상승을 반영, 업종 대표주에 투자 ✓ Global Top 50이내의 사업부문, 품목 보유 기업, Domestic No. 1 기업 ✓ 기업가치와 더불어 성장성, 수익성이 업종평균/시장평균 이상인 기업 ✓ 고배당기업 및 현금창출능력이 우량하여 주주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기업 ✓ 지배구조가 우량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기업

- 채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내에서 금리전망에 따라 듀레이션을 고려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주력하며,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및 CD금리선물을 이용하여 자산가격하락 위험에 대처합니다.
- 어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하로 투자합니다.
- 투자자산간 또는 투자자산내에 분산투자 및 Loss-Cut제도 시행으로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2.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당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주식	60%이상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동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성질을 구비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채권	40%이하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는 제외)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40%이하	-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15%이하 (위탁증거금기준)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금리스왑거래	100%이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수익증권	5%이하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ETF	30%이하	-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투자증권의 대여	50%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50%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투자증권의 차입	20%이하	- 약관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국내주식	60%이상	- 약관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에의 투자는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펀드재산의 60% 이상으로 한다.
단기대출	-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 예치	-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기타	-	-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투자비율 적용예외	<p>약관 제37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1호의 규정(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금리스왑거래)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

4. 투자제한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77 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6 조 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 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증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3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년 3 월 · 6 월 · 9 월 · 12 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3 월간 적용합니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 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 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6.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

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8.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약관 제37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은 약관 제37조제1항제8호, 제3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산정 및 공시

1. 자산평가

-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2.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ditm.co.kr)·판매회사(www.daishin.co.kr , www.hanabank.com)·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높아서는 아니된다.
- 회사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 매매를 위탁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 사 명 : 대신투자신탁운용주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TEL : 769-3247)
- 연 혁
 - 1988.03.24 대신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10억원)
 - 1988.04.01 투자자문업 등록(재무부 등록번호 제8호)
 - 1988.10.27 미 SEC 등록
 - 1996.06.11 자본금 300억으로 증자
 - 1996.07.01 대신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1999.02.19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경영 인가(재정경제부)
 - 1999.08.26 일본 Sumitomo Life Insurance Co. 지분참여 (대신증권주) 81%, 스미토모생명 19%)
 - 2001.07.05 Daishin Asset Investment System(DAISYS) 2002 개발
 - 2006.09.13 지분변경(대신증권주) 100%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합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요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과 목	제 19 기	제 18 기	과 목	제 19 기	제 18 기
	(2007.3.31)	(2006.3.31)		(2006.4.1~2007.3.31)	(2005.4.1~2006.3.31)
유동자산	36,815,598	37,376,967	영업수익	5,844,561	5,731,312
고정자산	4,051,213	4,006,669	영업비용	4,612,199	4,013,791
자산총계	40,866,811	41,383,636	영업이익	1,232,362	1,717,521
유동부채	363,400	411,140	영업외수익	481	4,176
고정부채	143,858	13,675	영업외비용	914	7,729
부채총계	507,258	424,815	경상이익	1,231,929	1,713,968
자본금	30,000,000	30,000,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10,359,553	10,958,821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1,231,929	1,713,968
자본 총계	40,359,553	40,958,821	법인세비용	331,197	466,064
부채와 자본총계	40,866,811	41,383,636	당기순이익	900,732	1,247,904

4. 운용자산규모

(2007년 10월 31일 현재, 단위 : 억좌)

주식형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재간접	특별자산	투자일임	총 수탁고
2,626	873	3,454	5,388	2,110	1,408	402	522	1,283	18,066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08.09.30. 현재)

성 명	나 이	주요경력
최형근	1967년생 (42)	1995년 대신증권(주) 입사 1995년 대신증권(주) 주식팀, 선물옵션팀 2000년 대신투신운용(주) 주식운용부
나상혁	1971년생 (38)	1996년 대신증권(주) 입사 1997년 대신증권(주) 국제조사팀 1998년 대신증권(주) 런던현지법인 2002년 대신투신운용(주) 주식운용부
서범진	1972년생 (37)	1999년 대신증권(주) 입사 2000년 대신투신운용(주) 주식운용부
김삼두	1971년생 (38)	1999년 대신증권(주) 입사 2002년 주식부 2007년 대신투신운용(주) 주식운용부
이시형	1975년생 (34)	2002년 대신증권(주) 입사 2003년 대신투신운용(주) 주식운용부
김명식	1979년생 (30)	2006년 대신증권(주) 입사 2007년 대신투신운용(주) 주식운용부
김병수	1969년생 (40)	2001년 스틱투자자문 2003년 부국증권 선물옵션팀 2005년 스틱투자자문 2007년 키움증권 자산운용팀 2008년 대신투신운용(주) AI팀
조윤희	1976년생 (33)	2002년 대신증권(주) 입사 2004년 대신증권(주) 지정 2005년 대신투신운용(주) AI팀 상품개발
박수웅	1981년생 (28)	2006년 대신증권(주) 입사 2007년 대신경제연구소(주) 금융공학실 2007년 대신투신운용(주) AI팀
양승일	1967년생 (42)	1993년 대신증권(주) 입사 1997년 대신증권(주) 채권팀 1999년 대신생명(주) 채권팀 팀장 1999년 대신투신운용(주) 채권운용본부
이경신	1972년생 (37)	1999년 대신증권(주) 입사 2000년 대신투신운용(주) 채권운용본부

※ 펀드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위탁회사 또는 투신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1. 운용전문인력의 기타운용 현황

성명	운용구분	운용펀드수	운용자산 (억원)
최형근	공동	125	7,185
나상혁	공동	125	7,185
서범진	공동	125	7,185
김삼두	공동	125	7,185
이시형	공동	125	7,185
김명식	공동	125	7,185
김병수	공동	125	7,185
조운호	공동	125	7,185
박수용	공동	125	7,185
양승일	공동	76	12,663
이경신	공동	76	12,663
계	공동	201	19,848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1) 대신증권(주)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연 락 처: 769 - 2000
- 영업점포 현황: 전국 총 124개 지점 ※ 인터넷 홈페이지(www.daishin.co.kr) 참조
- 연 혁 :
 - 1975.04 대신증권(주) 상호변경
 - 2005.12 자본금 증자(유상, 3자배정)

2) 하나은행(주)

- 주 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1-1
- 연 락 처: 1588 - 1111
- 영업점포 현황: 전국 총 227개 지점 ※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bank.com) 참조
- 연 혁 :
 - 1993.07 은행으로 전환
 - 2005.12 하나금융그룹 공식 출범

2. 주요업무

1) 판매회사의 업무

- 간접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
 -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2) 위탁판매계약 체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3) 투자설명서 제공
-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제공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표준신탁약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판매행위준칙등
-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①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 ②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함)
 - ③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④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 ⑤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협회는 위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5) 판매장소
-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하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6) 의무 및 책임
-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III. 수탁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1) 수탁회사명 : 국민은행
- 2) 수탁회사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3) 주요 연혁

- 2001.11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합병 : 국민은행으로 명칭변경

2. 주요업무

1) 수탁회사의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수탁회사의 선관의무

- 수탁회사는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수탁받은 간접투자재산과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수탁받은 다른 간접투자재산 사이에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간접투자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그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투자대상 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계약의 내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수탁회사는 수탁받은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신탁업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와 관련된 운용을 포함함) 또는 자기가 영위하는 간접투자증권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운용행위감시

-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판매회사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수 있습니다.

4)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 수탁회사는 간접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②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③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④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⑤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수탁회사는 위 규정의 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수탁회사의 책임

-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4) 회사명 : (주)아이타스
- 5) 수탁회사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빌딩 4층 TEL) 02-2168-0400
- 6) 주요 연혁
 - 설립일: 2000년 6월

2. 주요업무

-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자산운용회사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수탁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1) 채권평가회사 : 한국채권평가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 회사연혁
 - 설립일 : 2000. 5. 29
 - 등록일 : 2000. 7. 1
 - 자본금 : 50억원
- 2) 채권평가회사 : KIS채권평가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 회사연혁
 - 설립일 : 2000. 6. 20
 - 등록일 : 2000. 6. 30
 - 자본금 : 30억원
- 3) 채권평가회사 : 나이스채권평가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5층
 - 회사 연혁
 - 설립일 : 2000. 6. 20
 - 등록일 : 2000. 6. 30
 - 자본금 : 55.5억원

2. 주요업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 ①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
 - ②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 ③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 4 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원이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5. 재판관할**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자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대차대조표
 - ✓ 손익계산서
 - ✓ 기준가격계산서
 -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 약관변경

-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 수탁회사의 변경
 -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고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광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시공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ditm.co.kr), 판매회사(www.daishin.co.kr, www.hanabank.com) 및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 판 매 일 : _____ 년 월 일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 ◆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 투자자 확인 사항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_____ 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